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3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3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년 3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하수과장 김홍배)

□ 제안이유

○ 하수처리수를 중수도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처리하여 공원살수용수, 도로청소용수, 하천용수, 수세식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및 공업용수등으로 저렴한 가격에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가 제정(2003. 6. 9 조례 제1961호)됨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자격증·지정서등을 교부할 경우의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급수공사 대행업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10조 제2항 신설)

○ 재이용수급수공사 신청 및 정수처분 해제 승인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정함.(안 제36조)

○ 건천화 방지 등의 하천유지용수, 시민의강, 호수공원 유지 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하천용은 공공용에서 제외함.(안 별표 3)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법 제36조 검사수수료는 상수도와 동일한지 ?	• 그렇습니다.
• 재이용수 생산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되었는데 1일생산 공급량은?	• 1일 45,000톤 생산 규모이며 시민이 강 25,000톤과 20,000톤은 화장실용, 공업용수 등 시민들이 사용하게끔 할 계획임.
• 재이용수를 자연정화 처리하기 위한 방법은 ?	• 시민의 강, 상동 호수공원에 수생식물을 재배하여 자연정화 처리 가능 하도록 함.
• 재이용수를 활용하여도 녹조현상이 발생하는데 ?	• 녹조현상은 질소, 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써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 일시적으로 보며 수시 청소를 통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음.
• 한강의 물을 끌어 쓴다면 원가 절감 된다고 보는데 ?	• 한강 원수는 톤당 190원이며, 재이용수는 톤당 170.5원임.
• 업종별 요금적용 조정으로 인해 하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	•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자립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이며 하수발생량이 늘어나면 원인자적 입장에서 하수도 요금 부과체계를 보아야 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35호
의 결 년월일	2004. 3. 19 (제111회)

제출년월일 : 2004. 3. 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하수처리수를 중수도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처리하여 공원살수용수, 도로청소용수, 하천용수, 수세식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저렴한 가격에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가 제정(2003. 6. 9, 조례 제1961호)됨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자격증·지정서등을 교부할 경우의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급수공사 대행업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수수료를 징수 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나. 재이용수급수공사 신청 및 정수처분해제 승인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정함.(안 제36조)

다. 건천화방지 등의 하천유지용수, 시민의 강, 호수공원유지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하천용은 공공용에서 제외함.(안 별표 3)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5,000원
2.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 교부 수수료

가. 신규 1건당 10,000원

나. 갱신 1건당　5,000원

제3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 수용가 세대당 4,000원. 다만, 계량기 구경이 100밀리미터이상이 되는 단일건물의 급수공사인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 요율을 적용한다.
2. 제8조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 4,000원
3. 제8조제4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 4,000원

4. 제31조제3항의 재이용수 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이상 6,000원

5.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미만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10,000원

별표 3의 공업용란 다음에 하천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공공용의 하천용란을 삭제한다.

하 천 용	건천화 방지등의 하천유지용수 및 시민의 강, 호수공원 유지용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급수검사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부천시수도급수조례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 ---------- ---------- ---------- ②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5,000원 2.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 교부 수수료 가. 신규 1건당 10,000원 나. 갱신 1건당 5,000원
<신 설>	
제36조(제수수료) ①시장은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이 있을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6조(제수수료) ①---------- ---------- ---------- ----.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 수용가 세대당 4,000원. 다만, 계량기 구경이 100밀리미터이상이 되는 단일건물의 급수공사인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 요율을 적용한다.
2. 제8조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2. 제8조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 4,000원
3. 제8조제4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3. 제8조제4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 4,000원
4. 제31조제3항의 재이용수 계량기 시험수수료	4. 제31조제3항의 재이용수 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6,000원
5. 제41조제2항의 징수처분 해제수수료	5.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0,0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기준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3〕

용도별 구분표

공공용	조경용	수변공원 및 생태공원등의 살수용수
	하천용	건천화 방지등의 하천유지용수 및 시민의 강, 호수공원 유지용수
	기타용	도로살수용수등

〔별표 3〕

용도별 구분표(제28조관련)

하 천 용		건천화 방지등의 하천유지용수 및 시민의 강, 호수공원 유지용수
공공용	조경용	수변공원 및 생태공원등의 살수용수
	기타용	도로살수용수등